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786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승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0.경 중국으로부터 미니향수, 무선이어폰, 캐릭터 열쇠고리 등을 수입(수입신고번호 B)하면서 미니향수 10,357점은



'CONTAINER'로, 무선이러폰 4,674점은 'KEY RING'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며, 미니항수 10점과 캐릭터 열쇠고리 2점은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11,701,335원(범칙시가 18,398,326원) 상당의 미니항수, 무선이러폰, 캐릭터 열쇠고리 15,043점을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항을 통해 반입하여 밀수입하려하였으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D)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미니 항수 959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35,674,8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합계 995,315,80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 적발되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0.경 E의 저작물인 캐릭터 'F'와 형상, 모양, 구성 등이 유사한 저작물이 포함된 위조 F 열쇠고리 1,000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2,500,000원)을 국내에 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되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 및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통관보류 분),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구매내역자료,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C/O), 적발물품 현품 사진

1. C 등 상표 감정결과 회신, F 캐릭터 지식재산권 침해 결과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관세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상품 밀수의 방법, 수량, 가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밀수입이 미수에 그쳐 위조상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_____